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윤리강령

2022. 5. 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주)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전 임직원이 업무 수행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와 의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소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연구소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경제 질서 존중)

연구소의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관련 법령 준수)

연구소의 임직원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을 준수한다.

제3장 행위기준

제6조(고객보호)

연구소의 임직원은 고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상충)

연구소의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이 사실을 연구소의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의 대표가 별도 승인을 한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당행위 금지)

연구소의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청탁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유지)

연구소의 임직원은 조사 분석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독립성 보장)

연구소의 임직원은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을 포함한 타 회사와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논리 및 조사 분석 방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소의 다른 임직원의 업무수행 시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외활동)

연구소의 임직원은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연구소의 임직원은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존중한다.

제13조(윤리강령 준수서약)

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 강령의 준수에 대한 서면 동의서(별첨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연구소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5. 25.>

이 강령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윤리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이나 연구소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2. 본인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일자 : 20xx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